

 건설교통부 MINISTRY OF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보도참고자료	일 시	'04.2.23(월)
		부 서	육 상 교 통 국 육상교통기획과
	www.moct.go.kr	☎	2110-8180-2

「대중교통전용지구」 기사 관련

□ 보도내용

- MBC 9시뉴스('04.2.22.) :『꼬리내린 교통대책』
 “백화점 업체가 반발하자 슬그머니 한발 물러섰습니다.....
 백화점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 한국경제신문('04.2.23.) : 「대중교통전용지구 백화점등 쇼핑시설 제외될 듯」
 “대로변에 있는 백화점, 할인점, 전문상가 등 대형쇼핑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대형 유통매장 주변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유통가에 파문을
 일으킨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 매일경제('04.2.23.) : 「백화점 자가용 금지 무산된 듯」

□ 건교부 입장

-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대중교통육성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시 정할 것이며,

하위 법령 제정과정에서 정부는 전문가 자문, 지자체 의견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할 것임

- 따라서 백화점 등이 대중교통전용지구에 포함되느냐 여부는 대상지역의 위치나 특성, 범위, 주민 및 관계자의 의견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므로,

동법의 제정과정에서 “포함된다” 또는 “제외된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음

- 「한국경제신문」의 건교부 관계자 언급 내용 중 “대로변에 있는 백화점 할인점 전문상가 등 대형 쇼핑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교통여건이 양호한”이라는 제한적 문구가 생략된 것이며,

“대형 유통매장 주변이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도 “교통상황과 관련 없이 대형할인매장이 있는 곳까지 지정하는 일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잘못 보도된 것임

-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육성법(안)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2월 27일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므로 동법 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의 수렴이 가능함

강영일
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장